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74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최민희 · 김우영 · 김 현
노종면 · 박민규 · 양문석
조인철 · 최혁진 · 한민수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송·변전설비 입지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론화 절차

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취 또는 수렴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를 “방법·절차, 공론화 절차의 방법, 전원설비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숙의형 공론조사의 방식 등에”로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송전선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론화 절차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에 따른다.

1. 전원설비공론화위원회: 주민대표, 지방의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내용과 갈등 조정 방안을 심의·권고하는 절차

2. 숙의형 공론조사: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쳐 사업의 입지 또는 대안에 관한 의견을 조사·분석하는 절차

③ 제2항 각 호의 절차에 참여하는 주민은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성별·연령별·읍면동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을 말한다)에 전원설비공론화위원회 구성 또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u><신 설></u>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u>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변전소·송전선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 가 위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론화 절차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에 따른다.</u> 1. <u>전원설비공론화위원회: 주민 대표, 지방의회, 전문가 및 관 계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내용과 갈등 조 정 방안을 심의·권고하는 절 차</u> 2. <u>숙의형 공론조사: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쳐 사업의 입지 또는 대안에 관한 의견 을 조사·분석하는 절차</u>

<신 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절차에 참여하는 주민은 해당 지역 전체 주민의 성별·연령별·읍면동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공직선거법」 제8조의9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을 말한다)에 전원설비공론화위원회 구성 또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취 또는 수렴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방법·절차, 공론화 절차의 방법, 전원설비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숙의형 공론조사의 방식 등에-----
-----.